

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0. 12. .

제 출 자 구 미 시 장

1. 개 정 이 유

-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소관변경, 법령위반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징수 규정과, 근거규정 폐지와 발급 실적이 없어 정비 해야할 수수료 징수 규정 및 법개정으로 추가할 수수료 징수 조항을 추가하고,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기를 통한 민원접수, 처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, 민원인에게 수수료 징수 규제를 완화,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소관 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징수 규정 (6건) 삭제.
- 법령개정 등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 규정(6건) 삭제.
-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징수 규정 (6건) , 【별표2】 삭제
- 근거규정 폐지 등으로 없어진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 (45건) 삭제.
- 발급 실적이 없는 등 실익이 없어 정비 해야할 수수료징수 규정 (19건) 삭제.
- 법령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징수 규정 추가 (13건)
- 제6조 (기납수수료 반환) — 삭제.
-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게 함.

3. 참고사항

- 고충처리위원회 평가07080-294(2000.6.8)
- 경북도 감사07000-435(2000.6.16),
- 구미 감사07000-395 (2000.6.28)
- 구미 기획11250-652(2000.9.6) 와 관련

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중 “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【별표1】”을 “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【별표3】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(별표 1)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【별표1】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【별표 1】

제증명 수수료 요율표

(단위:원)

구 분	기 준	요 율	비 고
< 증 명 >			
1. 인감에 관한 증명			
(1) 인감증명	1통	300	일제신고 등
(2) 인감의 개인신고	„	200	은제외함
2.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			
(1) 공장등록증명	„	300	
(2) 의료기관,약국 (휴,폐업) 사실 증명	„	500	
3.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구역 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			
(1) 공부의 등초본 교부			지적관계
· 대장문서	„	300	제외
· 토지도면	„	300	
· 건물도면	„	300	
(2) 공부열람			지적관계
· 기본료	시간당	100	제외
· 초과료	10분당	100	
(3) 인·허가 등록, 지정 등의 대장 열람	1건	100	
4.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			
(1) 환지(예정지 지정)증명	„	400	
(2) 환지예정지 분할	„	300	
(3)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	„	300	
(4) 환지예정지 변경신청	„	300	
(5) 체비지 분할 신청	„	300	
(6) 토지대금 완납증명	1통	300	
(7)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한도시 계획 결정 증명	1건	300	
5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
(1)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과세 증명	„	300	
(2) 세목별 과세증명	„	300	
6. 회계에 관한 증명			
(1) 원천징수공제증명	„	300	
(2)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		300	
(3) 입찰 참가신청	„	10,000	<신설'97.12.29>

구 분	기 준	요 율	비 고
7. 주택에 관한 증명 (1) 공(시)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	„	300	
8. 지가관련확인원 <신설'97.1.17>	1필지		
(1)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	1년도당	300	
(2)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개별 공시 (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 확인, 등)	„	300	
1. 일반행정 관계			
(1) 공유재산의 대부신청	1건	신규:500 계속:300	
(2)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	1매	50	
(3)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 일자 청구	1건	600	<신설'97.10.25>
(4) 기타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	„	500	
(5) 부동산중개업에관한증명 (가)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	1건	법 인:20,000 중개사: 5,000	
(나)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신청	„	1,000	
(다)분사무소 설치 신고	„	500	
2. 농수산물관계			
(1)내수면 어업 관계			
(가) 어업면허 신청	1건	1,600	
(나) 어업허가 신청	„	1,000	
(다)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	„	1,000	
(2)수산물 가공업 등록신청	„	2,000	
3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			
(1)일반대리점, 용제대리점등록 신청	1건	30,000	
(2)주유소등록 신청	„	20,000	
(3)용재 판매소 등록	„	10,000	
4. 건설관계			
(1) 도로부지(지하도,지하상가,기타)점용허가	1건	점용료의 1/1000	
(2)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신청	„	500	
(3)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공유 수면 점용 허가	„	허가시 공사비의 1/1000	
(4) 토석,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채취허가		점용료의 1/1000	
(5)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 (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)	1건	점용료의 1/1000	
(6) 하천(공유수면)점용(물량증가,명의변경) 허가	„	점용료의 1/1000	
(7) 하천(공유수면)허가사항 변경 신고	„	500	
(8) 재식 및 농업용하천(공유수면)점용허가	„	1,000	

구 분	기 준	요 율	비 고
(9)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			
(가)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	척당	500	
(나)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10인 이하의배	„	900	
(다) 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 정원 11인 이상20이하의배	„	1,300	
(라) 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배및기관을장치한배	„	2,100	
(10)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	1건	500	
(11) 토지사용(채비지)승낙서	„	500	
(12) 채비지 확인서(대부,매수,주소변경, 소유권 변경)	„	500	
(13)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	„	500	
(14) 권리변경(재개발지구) 행위허가신청	„	500	
5. 문화,공보관계			
(1) 종합,일반유원 시설업 신규허가신고	1건	50,000	
(2) 종합,일반유원 시설업 변경허가신고	„	50,000	
(3)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	„	30,000	
6.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이수받되는 인·허가, 신청, 신고, 등록, 지정, 확인, 등으로 타 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(법령상 의무사항 제외)	„	300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요율)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【별표1】 과 같다. 다만,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<u>【별표1】</u> 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	제3조(요율) ① <u>경상북도</u> <u>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, 【별표3】</u>
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, 복사 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<u>【별표2】</u> 와 같다	②.....
제5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및 입찰 참가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.	제5조(징수방법)①.....
<u><신설></u>	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<u>【별표1】</u>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
제6조(기납수수료의반환) 이미 납부한 수 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	<u><삭제></u>

신·구조문 대비표

(단위 : 원)

현행				개정안			
구분	기준	요율		구분	기준	요율	
【별표 1】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<증명>				【별표 1】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<증명>			
1. 인감에 관한 증명				1. -----			
(1) 인감증명	1통	300		(1) -----	--	----	
(2) 인감의 개인신고	"	200		(2) -----	--	----	
2. 병적에 관한 증명				<삭제>			
(1) 병적증명	"	200		< " >			
3. 신상에 관한 증명				< " >			
(1) 부양사실 증명	"	300		< " >			
4. 영업,직업에 관한 증명				< " >			
(1) 영업주	"	500		< " >			
(2) 중소기업자	"	500		< " >			
(3) 광업,공업,상업	"	50		< " >			
5.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				2. -----			
(1) 납세필 및 등록필	"	300		<삭제>			
(2) 생산실적	"	300		< " >			
(3) 수출실적	"	300		< " >			
(4) 납품실적	"	300		< " >			
(5) 건물사용	"	300		< " >			
(6) 공장원료 수용	"	300		< " >			
(7) 분배농지 상환완료	"	300		< " >			
(8)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(재교부)	"	300		< " >			
(9) 공장등록증명	"	300		(1) -----	--	----	
(10) 실수요자 증명	"	300		<삭제>			
(11) 원자재(시설재,공업요소) 소요량증명				< " >			
· 가소요량	"	300		< " >			
· 확정소요량	"	300		< " >			
(12) 시설보유증명	"	300		< " >			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(13) (식품,환경) 영업허가 (휴,폐업)사실	1건	300	<삭제>		
(14) 의료기관,약국 (휴,폐업) 사실 증명	„	500	(2) ----- -----	--	----
6.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구역내의 사실에관한 증명 및 열람			3. ----- ----- -----		
(1) 미분배 농지	„	300	<삭제>		
(2) 공부의 등초본 교부			(1) -----		
· 대장문서	„	300	· -----	--	----
· 토지도면	„	300	· -----	--	----
· 건물도면	„	300	· -----	--	----
(3) 공부열람			(2) -----		
· 기본료	시간당	100	· -----	--	----
· 초과료	10분당	100	· -----	--	----
(4) 인·허가 등록,지정 등의 대장 열람	1건	100	(3) -----	--	----
7.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			4. -----		
(1) 도로구축의 경계선,계획선 건축선 측량	1필지	5,000	<삭제>		
(2) 도로구축의 경계선,계획선 또는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	„	200	<삭제>		
(3) 환지(예정지 지정)증명	„	400	(1) -----	--	----
(4) 토지이용계획 확인원			<삭제>		
· 국토이용계획서	1통	300	< „ >		
· 도시계획확인원	„	300	< „ >		
· 군사시설확인원	„	200	< „ >		
· 농 지	„	200	< „ >		
· 산 림	„	200	< „ >		
· 자연공원	„	200	< „ >		
· 수도	„	200	< „ >		
(5) 환지예정지 분할	„	300	(2) -----	--	----
(6)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	„	300	(3) ----- -----	--	----
(7) 환지예정지 변경신청	„	300	(4) -----	--	----
(8) 체비지 분할 신청	„	300	(5) -----	--	----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(9) 토지대금 완납증명	1통	300	(6) -----	--	----
(10)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	1건	300	(7) -----	--	----
8. 지방세에 관한 증명			5. -----		
(1)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(비) 과세 증명	„	300	(1) -----	--	----
(2) 세목별 과세증명	„	300	(2) -----	--	----
(3) 징수유예 증명	„	300	<삭제>		
9. 회계에 관한 증명			6. -----	--	----
(1) 하자보증금납부(예치) 증명	1건	300	<삭제>		
(2) 원천징수공제증명	„	300	(1) -----		
(3)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,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	„	300	<삭제>		
(4) 납품 또는 공사 실적 증명	„	300	(2) -----	--	----
(5) 보상금 지불명령	„	300	<삭제>		
(6) 면세용도 물품증명	„	300	<삭제>		
9-1. 입찰 참가신청	„	10,000	(3) -----	--	----
10. 주택에 관한 증명			7. -----		
(1) 철거사실 증명	„	300	<삭제>		
(2) 공(시)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	„	300	(1) -----	--	----
11. 기타 제증명			< 삭제 >		
(1) 수산업에 관한 증명	1건	500	< „ >		
(2) 화재증명	„	500	< „ >		
(3) 소방시설의 증명	„	500	< „ >		
(4)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	„	500	< „ >		
건축물 관리대장 초본	„	400	< „ >		
건축물 관리대장 열람	„	200	< „ >		
(5) 기타 시설경비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	„	300	< „ >		
(6)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1 제3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 자 명부의 열람, 등사	„	300	< „ >		
12. 지가관련 확인원 <신설'97.1.17>			8. -----		
(1)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	1필지	300	(1) -----	--	----
(2) 토지(임야)대장등본에 개별 공시	„	300	(2) -----	--	----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[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 등]			[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지정, 확인, 등]		
1. 일반행정 관계			1.-----		
(1) 공유재산의 대부신청	1건	신규50 계속300	(1) -----	--	-----
(2) 토지등기설정 심사청구 신청	"	500	<삭제>		
(3)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	1매	50	(2) -----	--	-----
(4)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 일자 청구	1건	600	(3) -----	--	-----
(5) 기타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	"	500	(4) -----	--	-----
<신설>			(5)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		
			(가) 중개사무소개설 등록 신청	1건	법인20,000 중개사5,000
			(나)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	"	1,000
			(다) 분사무소 설치 신고	"	500
			<삭제>		
2. 산림관계			< " >		
(1)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	1건	500	< " >		
(2)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	"	500	< " >		
(3) 개간허가증 교부	"	500	< " >		
3. 농수산물관계			2. -----		
(1)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	1매	200	<삭제>		
(2)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	1건	500	< " >		
(3)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	1건	500	< " >		
(4) 도축검사 수수료			< " >		
(가) 소 말	1두	400	< " >		
(나) 돼지 양	"	80	< " >		
(다) 닭 오리	100수	150	< " >		
(라) 칠면조 거위	10수	40	< " >		
(마) 메추리 비둘기	100수	100	< " >		
(바) 개 사슴	1두	20	< " >		
(사) 토끼	10두	40	< " >		
(1) <신설>			(1) 내수면 어업 관계		
			(가) 어업면허 신청	1건	1,600
			(나) 어업허가 신청	"	1,000
			(다) 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	"	1,000
			(2) 수산물가공업등록 신청	"	2,000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4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			3.-----		
(1) 공장시설 등록 허가신청	1건	1,000	<삭제>		
(2) 공업단지 지정 승인	"	1,000	< " >		
(3)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	"	1,000	< " >		
(4)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	"	500	< " >		
(5) 청과시장 경매사 임명 승인 신청	"	1,000	< " >		
<신설>			(1) 일반대리점, 용제 대리점등록 신청	1건	30,000
<신설>			(2) 주유소등록 신청	"	20,000
<신설>			(3) 용재 판매소 등록	"	10,000
5. 건설관계			4.-----		
(1) 도로부지(지하도, 지하상가, 기타) 점용허가	1건	점용료의 1/1000	(1) -----	---	---
(2)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신청	"	500	(2) -----	---	---
(3)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 수면 점용 허가	"	허가사공 사비의 1/1000	(3) -----	---	---
(4) 토석,사력등 공유수면 산출 물의 채취허가		점용료의 1/1000	(4) -----	---	---
(5)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 (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)	1건	점용료의 1/1000	(5) -----	---	---
(6) 하천(공유수면)점용(물량 증가,명의변경)허가	"	점용료의 1/1000	(6) -----	---	---
(7) 하천(공유수면)허가사항 변경 신고	"	500	(7) -----	---	---
(8) 재식 및 농업용 하천 (공유수면)점용허가	"	1,000	(8) -----	---	---
(9)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	"	1,000	<삭제>		
(10)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			(9) ----- ---		
(가)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	척당	500	(가) ----- -----	---	---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(나)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이상10이하의배	"	900	(나) ----- -----	--	—
(다) 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 정원11인이상20이하의배	"	1,300	(다) ----- -----	--	—
(라)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배및기관 을장치한배	"	2,100	(라) ----- ----- -----	--	—
(11) 동행료(도선료)의 징수 허가신청	1건	1,000	<삭제>		
(12) 공영주택의 양수,양도등 승인신청	1건	500	<삭제>		
(13) 공(시)영주택(증개축) 승인신청	"	500	<삭제>		
(14)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	1건	1,000	<삭제>	--	—
(15)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	"	500	(10) -----	--	—
(16) 토지사용(채비지)승낙서	"	500	(11) -----	--	—
(17) 체비지확인서(대부,매수, 주소변경,소유권 변경)	"	500	(12) ----- -----	--	—
(18) 채비지 소유자 확인원	"	500	(13) -----	--	—
(19) 권리변경(재개발지구)행위 허가신청	"	500	(14) ----- -----	--	—
6. 보건,사회관계			<삭제>		
(1)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	1건	500	< " >		
(2) 이·미용업소 신고필증 교부(재교부포함)	1건	500	< " >		
(3) 이미용업소의 명칭등의 변경신고	1건	500	< " >		
(4) 공공목욕장 명칭 변경	1건	500	< " >		
(5) 공공목욕장 영업허가증 재 교부	1건	500	< " >		
(6)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	1건	500	< " >		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(7) 사실묘지,시설화장장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	1건	500	<삭제>		
(8) 묘지개장허가 신청	1건	500	< „ >		
(9) 시체운반업,허가사항의 변경 허가	1건	500	< „ >		
(10)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	1건	500	< „ >		
(11) 유기장업<신설'97.2.12> (가) 컴퓨터게임장업,기타 유기장 업 신규허가 (명의변경 포함)	1건	25,000	< „ >		
(나) 컴퓨터게임장업,기타 유기장업 변경허가 (장소,구조)	„	13,000	< „ >		
(다)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허가(명의변경포함)	„	50,000	< „ >		
(라)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(장소,구조)	1건	50,000	< „ >		
(12) 숙박업<신설'97.2.12> (가) 호텔업,콘도미니엄업신고 (명의변경포함)	„	90,000	< „ >		
(나) 호텔업,콘도미니엄업변경 신고(장소,구조)	„	45,000	< „ >		
(다) 여관업 및 농원 여관업 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30,000	< „ >		
(라) 여관업 및 농원 여관업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15,000	< „ >		
(마)여인숙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8,000	< „ >		
(바) 여인숙업 변경신고(장소, 구조)	„	4,000	< „ >		
(13) 목욕장업 <신설'97.2.12>			< „ >		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(가) 공동탕업,가족탕업,한증막업 신고 (명의변경포함)	„	10,000	<삭제>		
(나) 공동탕업,가족탕업,한증막업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(다) 사우나탕업,증기탕업,복합목욕탕업변경 신고 (명의변경 포함)	„	50,000	< „ >		
(라) 사우나탕업,증기탕업,복합목욕탕업신고(장소,구조)	„	25000	< „ >		
(14) 이·미용업<신설'97.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(명의변경포함)	1건	10,0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(15) 세탁업<신설'97.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3,5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2,300	< „ >		
(16) 위생관리용역업<신설'97.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10,0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(17) 위생처리업<신설'97.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10,0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(18)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<신설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 (명의변경포함)	„	10,0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 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(19) 장난감 제조업<신설'97.2.12>			< „ >		
(가) 신규신고(명의변경포함)	„	10,000	< „ >		
(나) 변경신고(장소,구조)	„	5,000	< „ >		

현행			개정안		
구분	기준	요율	구분	기준	요율
7. 문화,공보관계			5. -----		
(1) 공연자 등록신청	„	2,000	<삭제>		
(2)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	„	300	< „ >		
(3) 공연장 설치허가			< „ >		
(가) 공연장	,	10,000	< „ >		
(나) 가설공연장	„	3,000	< „ >		
(다) 임시공연장	„	500	< „ >		
(4) 공연장 증축허가			< „ >		
(가) 공연장	„	5,000	< „ >		
(나) 가설공연장	„	1,500	< „ >		
(다)임시공연장	„	150	< „ >		
(5)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	„	300	< „ >		
(6) 각본등 심사신청	„	1,000	< „ >		
(7) 공연장 양수신고	„	500	< „ >		
(8) 문화재 매매업 허가신청	1건	500	< „ >		
(9) 출판사,인쇄소 등록 신고	„	500	< „ >		
(10) 출판사,인쇄소 등록사항 변경	„	300	< „ >		
(11) 음반 판매업 등록 신청	„	1,000	< „ >		
(12) 음반 판매업자 변경등록 신청	„	500	< „ >		
(13) 음반판매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	„	500	< „ >		
<신설>			(1) 종합,일반유원시설업 신규허가신고	1건	50,000
<신설>			(2) 종합,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고	„	50,000
<신설>			(3) 기타유원시설업영업 신고	„	30,000
8.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수반되는 인· 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으로 수수료에 관한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(법령상 의무사항 제외)	„	300	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	---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【별표2】 행정정보공개열람복사 수수료			【별표2】 행정정보공개열람복사 수수료		
종별	기준	수수료 (원)	종별	기준	수수료 (원)
문서 또는 필름 열람	· 1건 1매	100	삭제	삭제	삭제
문서 또는 필름 복사	· 1매마다 · 21매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름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되는 2매마다	100			
필름 복제	·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 마다 ·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- 16mm 1롤 마다 - 35mm 1롤 마다	2,000 7,000 11,000			
사진 인화	· 흑백 1매 마다 - 8"×10" - 5"×7"	600 300			

※비고

○ 필름복제의 경우 1롤 미만은 1롤로 계산한다.